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 
번호

제753호

2017. 12. 14.(목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박우양 의원 등 6인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2017년 11월 30일

-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영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증채무 채권자의 도지사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, 약칭 사용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(안 제2, 3, 4, 7조)  
- '기타' → '그 밖의', '상이' → '다른 점'
- 약칭 사용을 정비함 (안 제3조)
-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를 삭제함 (제6조 삭제)
-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고, 별지 제5호 서식은 삭제함.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)

#### 가. 주요 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, 법률의 위임이 없는 보증채무 채권자의 도지사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, 약칭 사용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임.
- 먼저 본 조례안에서 제6조(보고)와 이에 따른 채권자 보고서식인 <별지 제5호서식>을 삭제한 것은,
  - 기존 제6조에 규정된 채권자의 보증채무현황 보고의무 조항은 ‘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’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의 규정을 벗어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임.
  - 따라서, 제6조를 삭제하고, 이에 따른 채권자 보고서식인 <별지 제5호서식>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.
- 또한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제3호의 용어 중 ‘기타’를 ‘그 밖의’로 바꾸고, 안 제4조제2항의 ‘상이’를 ‘다른 점’으로 변경하였으며,
- 기존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‘승인’가 ‘의결’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, 안 제3조 및 제7조의 용어 중 ‘승인’은 상위 법률인 「지방재정법」에 사용된 용어인 ‘의결’로 통일함.
- 안 제3조, 제4조에서는 약칭 사용 표기 없이 잘못 사용된 약칭인 ‘도’를 ‘충청북도’로 변경함.
-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함.
  - ‘기타’ ⇒ ‘그 밖의(에)’ / ‘자’, ‘지’ ⇒ ‘부터’, ‘까지’

#### 나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재정법」의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
- 절차상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#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우양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753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11월 21일

발의자 : 박우양, 김영주, 이양섭,  
박종규, 윤은희, 이광희

## 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증채무 채권자의 도지사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, 약칭 사용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(안 제2, 3, 4, 7조)
  - ‘기타’ → ‘그 밖의’, ‘상이’ → ‘다른 점이’
- 나. 약칭 사용을 정비함 (안 제3, 4조)
- 다.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함 (제6조 삭제)
- 라.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고, 별지 제5호서식은 삭제함.

## 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- 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-71호
- 라. 협의 :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과 협의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도지사” 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” 로,  
“도” 를 “충청북도” 로, “승인을 받아야” 를 “의결을 얻어야” 로 한다.

제4조 제2항 중 “상이” 를 “다른 점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” 를  
“충청북도” 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승인” 을 “의결” 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 별지 제5호  
서식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참고서류</p>	<p>제2조(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의</u> ---</p>
<p>제3조(채무보증의 승인) ① <u>도지사</u>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<u>도가</u>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<u>승인</u>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3조(채무보증의 승인) ①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-</u> <u>충청북도</u> ----- ---- <u>의결</u>을 얻어야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채무보증서의 교부) ① (생 략)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<u>상</u>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교부한다.</p> <p>③ <u>도가</u>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.</p>	<p>제4조(채무보증서의 교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다른</u> <u>점이</u> ----- -----.</p> <p>③ <u>충청북도</u>----- -----.</p>
<p>제6조(보고) <u>채권자는 채무액, 이자,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 채무현황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년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7조(보증채무의 이행) ① (생 략)</p> <p>② 도지사가 제1항의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<u>승인</u>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7조(보증채무의 이행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결</u>----- -----.</p>

<별지 제1호서식>

## 채무보증신청서

제 호

충청북도지사 귀하

주채무자

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충청북도지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명(보증채무의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)

2. 내용

가. 채권자

나. 채무액

다. 이자율 년

라.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

마. 상환계획

3. 사유

가. 주채무발행

나. 충청북도 보증이 필요한 사유

다.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4. 준수사항

가.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나.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, 채무 이행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다. 충청북도지사는 나 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


<별지 제2호서식>

## 채무보증승인통지서

제 호

귀하

충청북도지사 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.

1. 주채무자

2. 채무건명

3. 채 무 액

4. 이 자 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

5. 상환기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까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간

6. 상환재원

7. 담 보

8. 용자재원

9. 관계기관

10. 채무보증 근거

11. 기 타

12. 준수사항

가.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나.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, 채권자, 그 밖의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, 채무 이행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다. 충청북도지사는 나 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라. 채권자는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마.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.

<별지 제3호서식>

##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

제 호

충청북도지사 귀하

채권자

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

1. 주채무자

2. 채무건명

3. 채무액

4. 이자율 년

5.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

6. 상환재원

7. 담보

8. 용자재원

9. 기타

10. 준수사항

가.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나. 충청북도지사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, 사업운영 상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, 채무 이행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다. 채권자는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<별지 제4호서식>

## 채 무 보 증 서

제 호

채권자

귀하

충청북도지사

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.

1. 주채무자

2. 채무건명

3. 채 무 액

4. 이 자 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

5. 상환기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까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간  
(충청북도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)

6. 상환재원

7. 담 보

8. 용자재원

9. 관계기관

10. 채무보증근거

11. 기 타

12. 준수사항

가.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나.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, 사업운영 상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, 채무 이행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다. 채권자는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재정법

- 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(이하 “주채무“라 한다)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**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-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**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**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·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-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수반사항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제1호  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이번 충청북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,
- 나.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변동사항이 없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